

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

취업지원 신청인	성명
	주소
불인정 사유	☐ 근로능력 또는 구직의사가 없음
	☐ 연령요건 ¹⁾ 미충족
	☐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²⁾ 미충족
	☐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³⁾ 에 해당하지 않음
	☐ 그 밖의 사유
(구체적 사유)	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의
의
의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
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직인

안내 사항

- 1)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를 말합니다. 다만,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에 따라 6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(「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」)로 정한 요건에 따라 참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.
- 2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(이하 "기준 중위소득"이라 함)의 100분의 100 이하를 말합니다. 다만, 15세 이상 34세(「병역법」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」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을 가산합니다) 이하인 사람의 경우는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를 말합니다.
- 3) 학력·경력·부족, 고령, 육체적·정신적 장애, 장기적인 실업 또는 국외에서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

1.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2.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·제주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청장"을 가함)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자() 전화번호() 팩스번호()